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5-416
----------	-------

제출연월일 : 2010. 1.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개정이유

「주차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948호 '08.07.31.시행) 일부개정예 따라 시설 기준 1만㎡ 이상의 공장의 부설주차장이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발전과 투자촉진을 위하여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설치 및 기준 완화 (안 별표2)

당초 : 350㎡당 1대, 변경 : 350㎡당 1대 (다만, 1만㎡이상 일 경우 400㎡당 1대)

☐ 개정조례안 : 해당없음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 예산수반상황 : 비예산사업

☐ 입법예고결과 : 의견제출없음

2009. 11. 16. ~ 2009. 12. 10. (25일간)

☐ 부서협의결과

지역경제과 협의완료

☐ 기타 참고사항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교통행정과
입 안 자	실 · 과장 직위 · 성명	교통행정과장 박상정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교통지도담당 김 일
	담당자 성명 · 전화	김재기 (860-2293)

[별표 2] <개정 2008. 6. 16. 201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단, 장례식장은 시설면적 80㎡당 1대(시설면적/8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 + \{(시설면적 - 150㎡) / 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u>단 시설면적 1만㎡이상인 경우</u> <u>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u>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중전 별표 2] <개정 2008. 6. 16.>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단, 장례식장은 시설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8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관계법령 발췌서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4.2.9, 2005.7.27, 2008.7.31, 2009.7.7>

1. 오지·벽지·도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역의 주차장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
5.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 안에서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신설>